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예비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경두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군인재해보상법」이 제정('19.12.10. / '20.6.11. 시행)됨에 따라 예비군 재해보상금(장해보상금, 사망보상금) 지급기준 및 준용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액과 지급을 위한 준용 근거를 「군인연금법」에서 신설된 「군인재해보상법」으로 변경 (안 제21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0. 7월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

대통령령 제 호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전단의 “「군인연금법」 제31조 및 제32조”를 “「군인재해보상법」 제33조 및 제39조”로 하고, 후단은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 (재해보상금의 지급)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,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「<u>군인연금법</u>」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「<u>군인연금법</u>」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제3조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은 병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. ② (생략)	제21조 (재해보상금의 지급)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,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「<u>군인재해보상법</u>」 제33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. ② (생략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예비전력과	
연 락 처	(02) 748 - 5244